중원대학교 학칙

[제정 2009.03.01.] [개정 2009.06.30., 전면 개정 2011.08.23., 전면 개정 2012.08.06., 개정 2014.03.01., 2015.03.01., 2016.05.19., 2017.02.02., 2018.01.26., 2019.05.28., 2019.11.05., 2020.02.26., 2020.09.09., 2020.10.06., 2021.06.25., 2021.11.30., 2022.07.01., 2023.02.20., 2023.08.23., 2023.11.27., 2024.01.24., 2024.06.18., 2024.08.30., 2025.02.13., 2025.08.14., 2025.11.17., 2026.05.06., 2026.08.12., 2026.00.00.]

학사팀 043-830-80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중원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대학헌장 전문과 제1장 총칙에 정한 설립목적,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발전전략, 특성화 방향 등을 구현 또는 추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01., 2021.06.25.>

제2조(교육 이념, 교육 목적 등) ① 우리대학교는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상생교육을 건학정신으로 받들고 성(誠; 올곧은 마음), 경(敬; 가없는 배움), 신(信; 한결같은 믿음)을 교육이념이자 교훈으로 삼는다.

② 우리대학교는 융합형 연구를 통해 전문지식을 탐구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 인류공영(人類共榮), 안심입명(安心立命)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및 세계와 더불어 화합하고 발전하며,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③ 우리대학교는 전문지식인 양성, 개방형 인재 양성, 봉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④ 우리대학교는 이러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창조적 전문인, 진취적 개방인, 실천적 봉사인을 인재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06.25.]

제3조(교육조직 및 입학정원) ① 우리 대학교에 사회문화교양대학, 체육대학, 의료보건대학, 융합항공대학, 글로컬인재대학, 글로벌K-컬처대학, 충북 PRIDE 공유대학 및 대학원, 사회문화대학원, 평생학습대학원을 둔다. <개정 2014.03.01., 2015.03.01., 2016.05.19., 2018.01.26., 2020.02.26., 2022.07.01., 2023.02.20., 2024.06.18., 2025.08.14.>

② 대학원, 사회문화대학원, 평생학습대학원의 학칙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1., 2016.05.19.>

③ 각 대학과 학부에 설치하는 학과(전공)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03.01., 2015.03.01., 2018.01.26., 2019.05.28.>

제3조의2(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사학위과정의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02.02.>

③ 계약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03.01.]

제3조의3(정원외 전담학과 설치·운영) ①「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학과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유학생 전담 학과의 학사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수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8.30.>

[본조신설 2024.06.18.]

제3조의4(성인학습자 전담 학과 설치·운영) ①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성인학습자 전담 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성인학습자 전담 학과의 학사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08.30.]

제4조(정원외 입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3.01.>

제4조의2(자체평가 등)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우리 대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부속기관과 부설기관에 대하여 2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03.01.]

제4조의3(구조개혁) ① 우리 대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학제, 교육과정, 조직, 인사 등 교육전반에 걸쳐 필요한 구조개혁과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구조개혁 기본계획의 수립, 선정기준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02.02.]

제2장 부속기관 및 연구소

제5조(부속기관 및 연구소) ① 우리 대학교에 두는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은 우리 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03.01.>

② 제1항의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1.>

제6조 삭제 <2014.03.01.>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7조(수업연한) 우리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졸업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최대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2015.03.01., 2026.05.06.>

제8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로 하되, 외국인·재외국민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03.01.>

③ 편입학한 학생이나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남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03.01.>

제4장 학년도·학기·수업일수·휴업일

제9조(학년도) 우리 대학교의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03.01., 2017.01.26.>

제10조(학기) ① 학년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 학기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상 필요에 따라 학과(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2018.01.26., 2020.02.26., 2025.02.13.>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② 학사운영의 필요에 따라 방학 중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1., 2021.06.25.>

③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실습학기, 창업실습학기, 프론티어학기 및 신입생동기유발학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학기, 창업실습학기, 프론티어학기 및 신입생동기유발학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4.03.01., 개정 2019.11.05.>

④ 제1항의 학기는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매 학기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 또

는 후에 개강할 수 있다. <신설 2018.01.26.>

제11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③ 총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3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같은 학기 내에서 주말 등을 활용한 집중수업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

[전문개정 2018.01.26.]

제12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개교기념일(5월 6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3.01., 2021.06.25.>

② 총장은 비상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휴업일을 변경하거나 임시 휴업일을 정할 수 있으며, 휴업일에도 수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제5장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제목개정 2016.05.19.]

제13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 및 편입학은 매학기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입학자격) 우리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14.03.01.>

제15조 삭제 <2014.03.01.>

제16조(입학지원) 우리 대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1.>

② 삭제 <2014.03.01.>

제17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03.01., 2021.11.30.>

②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1.30.>

③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1., 2021.11.30.>

제18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전형에 합격하고 정해진 등록을 마친 자에게는 총장이 입학을 허가한다. <개정 2014.03.01.>

② 삭제 <2014.03.01.>

③ 삭제 <2014.03.0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4.03.01., 2017.02.02>

1.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2.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자
3. 지원자격을 위반한 자

제19조 삭제 <2014.03.01.>

제20조(편입학) ① 우리 대학교의 편입학은 정원 내 편입학과 정원 외 편입학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03.01.>

② 정원 내 편입학은 해당 학년도 모집단위별로 결원이 있는 경우에 선발할 수 있으며, 편입학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1.>

1. 다른 대학에서 제2학년 이상 수료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③ 정원 외로 편입학할 수 있는 자격 및 정원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4.03.01.>

④ 편입학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1.>

제21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자퇴 또는 제적의 사유와 그 사유의 해소 또는 면제 이유를 기재하여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1., 2021.06.25.>

② 총장은 총 정원에 남은 인원이 있는 경우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제적된 학기로부터 한 학기를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1., 2019.11.05.>

③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개전의 정이 확실하며 성행이 우량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 단과대학 교수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④ 학사경고 또는 유급으로 제적된 자는 그 횟수를 재입학 이후 발생분과 통산하지 않는다. <신설 2014.03.01., 개정 2019.11.05.>

제6장 전과 및 학과배정 [제목개정 2022.07.01.]

제22조(전과) ① 전과는 입학 후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학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옮기려는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2018.01.26., 2021.06.25., 2025.08.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로 전과하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03.01., 2019.11.05., 2021.11.30.>

③ 전과한 자는 전과가 허용된 학과, 학년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1., 2021.06.25.>

④ 전과 자격요건 및 제한 사항등의 세부사항은「학사운영규정」에 정한다. <신설 2014.03.01.><개정 2021.06.25.>

제22조의2(학부 모집단위의 운영) ① 학부 모집단위의 학과배정은 1학년 2학기말에 신청 절차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과를 배정한다. 다만 자율전공학부는 학과배정 없이 희망하는 학과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모집단위가 학부인 재적생은 학부 안의 학과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율전공학부는 제3항에 따른다.

③ 자율전공학부 재적생의 학위 수여는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를 제외하고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학사운영규정」에 정한다.

[본조신설 2022.07.01.]

제7장 등록

제23조(등록금) ① 학생은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1.>

② 등록금은 학기 단위로, 시간제 등록생, 계절수업 및 수업연한(8학기) 초과 수강생의 등록금은 학점 단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1., 2019.11.05.>

③ 총장은 입학 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학비 조달이 곤란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④ 총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별로 등록금의 분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03.01.><개정 2021.06.25.>

제24조(장애학생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② 학점등록 등에 관한 절차적 규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5조(등록금 반환) ①「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4.03.01.>

② 등록금 반환기준의 세부사항은 「학사운영 규정」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1., 2016.05.19., 2021.06.25.>

제26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1.>

② 매학기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수는 12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18학점(간호학과, 항공운항학과는 21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계절 학기 수강신청은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2015.03.01., 2018.01.26., 2021.06.25.>

③ 직전학기에 최소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4.2이상인 자는 수강신청학점에서 3학점을 초과하여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취득성적포기과목 또는 F등급인 교과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03.01., 2015.03.01., 2021.06.25.>

④ 학사 경고자에게는 수강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03.01.>

제8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제27조(휴학) ① 학생이 질병이나 병역의무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②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2019.11.05.>

③ 휴학의 세부구분은 「학사운영규정」에 정한다. <신설 2014.3.1.><개정 2019.11.05., 2021.06.25.>

④ 삭제 <2021.06.25.>

제28조(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끝나거나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범위까지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② 삭제 <2014.03.01.>

제29조 삭제 <2022.07.01.>

제30조(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적된다. <개정 2014.03.01., 2022.07.01., 2024.06.18.>

1. 미등록: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은 자
2. 미복학: 휴학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 기간에 복학하지 않은 자
3. 자퇴: 학업을 스스로 그만두고자 자퇴원을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자
4. 학사경고: 재학 중 학사경고를 모두 4회 받은 자
5. 재학연한초과: 학칙 제8조의 재학연한까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6. 징계: 학칙 제66조 해당자 중 징계 결과 퇴학 처분을 받은 자
7. 다른 대학에 입학하였거나 이중 학적을 가진 자
8. 질병 및 그 밖의 사정으로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장 교과목과 그 이수

제31조(교육과정) ① 우리 대학교의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 등으로 구분하며, 우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1.>

②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1., 2019.11.05.>

③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하여 학과(전공)에 따라서는 교직과정 교과목을 설치 교수할 수 있다.

④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교양, 전공,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 인증평가

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 인증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0.06.><개정 2021.11.30.>

⑤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학과별 인증평가와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로 정해지지 않은 범위내에서 소속학과의 내규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1.30.>

⑥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교과목 중 일부는 원격 교과목과 지역 연계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원격 교과목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격 교과목 및 수업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지역 연계 교과목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1.30.> <개정 2023.02.20., 2025.02.13.>

제32조 삭제 <2014.03.01.>

제33조(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교육과정을 국내외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2026.05.06.>

② 공동 학위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 정한다. <개정 2014.03.01., 2021.06.25.>

제33조의2(교과목 개설 및 운영) ①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정한다.

② 교과목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 정한다. <개정 2021.06.25.>

[본조신설 2014.03.01.]

제34조(교과목 이수단위) ①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이수시간은 학기마다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03.01., 2021.06.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이나 실기 교과목의 학점당 이수시간은 학기마다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03.01., 2021.06.25.>

제35조 삭제 <2014.03.01.>

제36조(수업의 방법 등)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2018.01.26., 2019.11.05., 2021.06.25., 2025.02.13>

② <삭제 2025.02.13.>

③ <삭제 2025.02.13.>

④ 교과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칙 제34조에 따른 학점당 수업시간을 준수하여 수업일수를 단축하고 집중이수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02.13.>

⑤ 학생의 전공, 학년 학위과정에 따라 학기의 기간을 달리 정하는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02.13.>

⑥ 재난의 발생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 수업 등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5.02.13.>

제36조의2(학교 밖 수업) 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한다.

② 이동수업은 대학 소재지 출석수업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의 장소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수업을 말하며, 이동수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장애가 있는 학생
2.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 직업 특성상 통학이 어려운 학생
3.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실습학기제에 참여 중인 학생

③ 협동수업은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현장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목적으로 산업체 및 연구기관, 지방자체단체 등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시설, 장비, 인력을 활용하여 학교 밖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협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학점 인정범위는 졸업학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학교 밖 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01.26.][전문개정 2025.02.13.]

제37조(학점인정) ① 교과목별 성적이 D^0등급 이상이거나 Pass(P)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4.03.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4.03.01., 2017.02.02.> <개정 2026.05.06.>

1.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한 경우
2.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4. 국내외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대학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5.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6. 제3조의4에 따른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입학자가 국내외의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을 총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③ 제2항의 학점인정 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학점인정은 학기 당 6학점, 연간 12학점, 군복무 중 24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성적은 "P/F"로 처리한다. <개정 2026.05.06.>

④ 제33조에 따라 국내외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우리 대학교와 타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거나 타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로 한다. <신설 2014.03.01., 개정 2026.05.06.>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6호에 따른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입학자의 학점인정 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신설 2026.05.06.>

⑥ 오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은 정정하거나 취소한다. <신설 2026.05.06.>

제38조(편입학 등의 학점인정) ① 제20조에 따라 편입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우리 대학교 해당 학과 및 전공의 교육과정 범위에서 인정하고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개정 2014.03.01.>

② 재입학한 학생이 제적 전에 이수한 학점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③ 전과한 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제22조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14.03.01.>

제39조 삭제 <2014.03.01.>

제39조의2(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 학점인정) ①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우리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그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03.01.]

제40조(다전공) ① 삭제 <2021.06.25.>

② 삭제 <2021.06.25.>

③ 삭제 <2021.06.25.>

④ 삭제 <2021.06.25.>

⑤ 소속 학과의 주전공을 제외한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을 통칭하여 '다전공'이라 한다. <신설 2021.06.25.>

⑥ 다전공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06.25.>

1. 부전공 : 소속 학과 주전공 이외의 학과에서 소정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하는 제도
2. 복수전공 : 소속 학과 주전공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주전공 외 나머지 전공들에 대해서 이수하는 제도
3. 연계전공 : 동일 계열의 2개 이상 학과가 연계한 새로운 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제도

4. 융합전공 : 다른 계열의 2개 이상의 학과가 융합하여 새로운 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제도
5. 학생설계전공 : 소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적 수요, 진로, 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교내편성된 교과목을 조합하여 스스로 전공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이수하는 제도

⑦ 다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 정한다. <신설 2021.06.25.>

[제목개정 2021.06.25.]

제40조의2 삭제 <2021.06.25.>

제40조의3 삭제 <2021.06.25.>

제40조의4(학사·석사 연계과정) 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재학 중 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② 학사석사 연계과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03.01.]

제40조의5 삭제 <2021.06.25.>

제40조의6 삭제 <2021.06.25.>

제40조의7(소단위 전공) ① 소속 학과의 주전공, 다전공을 제외한 나노디그리 과정,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통칭하여 '소단위 전공'이라 한다

② 소단위 전공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노디그리 과정 : 1개의 학과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화형 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제도
2.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 2개 이상의 학과에서 학문 간 융복합 사고능력 함양을 위해 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제도

③ 소단위 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 정한다.

[본조신설 2024.01.24.]

제41조(재이수) ① 성적이 C^+등급 이하인 교과목은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②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종 이수한 학기의 성적을 취한다.

제42조(학점취득 특별시험) ①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학생은 총장이 지정하는 교양과목에 대해 특별시험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② 학점인정 특별시험에 관한 절차적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1.>

제43조(취득성적의 포기) ①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C^+등급이하인 경우 이수 7학기부터 총 12학점 이내에서 그 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② 학점 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재학생에 한한다.

제44조(졸업학점과 졸업요건) ① 신·편입생이 졸업을 하기 위한 학점은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14.03.01., 2018.01.26., 2024.08.30., 2025.11.17.>

1. 2009~2014학년도 140학점 이상
2. 2015~2024학년도 130학점 이상
3. 2025학년도부터 120학점 이상. 다만, 간호학과의 경우 2025학년도는 135학점 이상, 2026학년도부터는 130학점 이상

② 제1항의 학점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03.01.>

1. 4년(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다만 조기졸업자와 편입생은 예외로 한다.
2.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이수한 교과목의 총 평점평균이 2.00 이상인 자.
4. 학과(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융합전공을 포함한다.) 별로 부과하는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등의 필요한 평가에 합격한 자.
5. 중원(졸업)인증제 요건을 충족 한 자.
6. 삭제 <2014.03.01.>

7. 삭제 <2014.03.01.>

③ 학과별 졸업학점 이수기준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졸업에 필요한 그 밖의 요건은 「중원졸업인증제 규정」 에서 정한다. <개정 2014.03.01., 2021.06.25., 2024.08.30.>

제45조(수료 인정학점) ① 학기별 취득 학점을 동일 학년별 두 개 학기씩 합산하여 매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으로 산정하며, 학년별 이수 인정학점 이상 취득을 권장한다. <개정 2014.03.01., 2021.06.25.>

② 각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06.25.><개정 2024.08.30.>

졸업 학점	학년별 수료 인정 학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20이상	30이상	60이상	90이상	120이상
130이상	32이상	65이상	97이상	130이상
140이상	35이상	70이상	105이상	140이상

③ 수료 인정학점은 전과, 재입학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1.06.25.>

제46조 삭제 <2014.03.01.>

제47조(학위수여) ① 학칙 제44조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증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4.03.01., 2015.03.01., 2019.05.28.>

② 정해진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제44조제2항의 졸업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별지서식 제2호>의 수료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③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2개 이상의 전공이 표기된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증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4.03.01., 2015.03.01., 2019.05.28.>

④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⑤ 연계, 융합,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2개 이상의 전공이 표기된 <별지서식 제1호>의 서식으로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1.06.25.>

제48조(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수여) ① 국내외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복수학위 및 참여 학교간 공동명의의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05.06.>

② 삭제 <2021.06.25.>

[제목개정 2026.05.06.]

제49조(조기졸업)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생, 재입학생, 학사경고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4.03.01., 2015.03.01., 2026.05.06>

1. 6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2. 제44조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
3. 성적 평점평균이 4.2 이상인 학생

② 조기졸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 정한다. <개정 2014.03.01., 2021.06.25.>

제49조의2(학사학위 취득유예) ① 학생은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2년까지 학사학위를 취득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6.05.19., 2019.11.05.>

② 학사학위 취득유예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 정한다. <신설 2021.06.25.>

[본조신설 2014.03.01.]

[제목개정 2019.11.05.]

제49조의3(명예학사학위 수여) 학사학위과정 재적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명예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국가수호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사람
2.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그 밖에 우리 대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명예학사학위를 수여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14.03.01.]

제50조(졸업의 시기) 졸업은 2월("전기"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졸업자 또는 1학기에 전 과정을 이수한 자의 졸업은 8월("후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03.01.>

제51조(학위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제10장 학업평가와 성적

제52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학습목표에 따라서 시험성적·과제평가·실험실습·출석상황 및 학습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4.03.01.>

②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③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 정한다. <개정 2014.03.01., 2021.06.25.>

④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 Pass(P) 또는 Fail(F)로 평가되는 교과목의 성적은 총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03.01.><개정 2021.06.25.>

⑤ 출석일수가 일정수준에 미달한 자의 해당 교과목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의 학기 중 조기 취업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05.>

제53조(시험) ① 시험은 정기시험·수시시험·추가시험 등으로 구분하되, 시험실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한다. <개정 2014.03.01., 2019.11.05.>

② 삭제 <2019.11.05.>

③ 병역,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시시험 또는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추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타 평가방법으로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4.03.01., 개정 2019.11.05., 2021.06.25.>

④ 추가시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 정한다. <신설 2014.03.01.><개정 2021.06.25.>

⑤ 삭제 <2021.06.25.>

제54조 삭제 <2014.03.01.>

제55조 삭제 <2014.03.01.>

제56조 삭제 <2014.03.01.>

제57조(평점평균) ① 해당 학기의 평점평균은 총 평점을 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4.03.01.>

② 성적 평점평균의 산출은 다음과 같은 산술평균치로 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한다. <신설 2014.03.01.>

1. 평점평균 = [(교과목별 평점 × 교과목별 학점)의 총합] ÷ 수강신청 총학점

제58조 삭제 <2014.03.01.>

제59조(학사경고) ①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한 학기 평점평균이 1.75에 미달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졸업하는 학기에는 학사경고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3.01.>

② 학사경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1.>

③ 삭제 <2014.03.01.>

제59조의2(장애학생의 인정 및 특례) ① 장애학생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이하"장애학생"이라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② 장애학생에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한다.

③ 제8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에게는 재학연한과 휴학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장애학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03.01.]

제11장 학생활동

제60조(학생회의 설치)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개교 정신과 교육목표에 따르는 학생자치활동을 위하여 우리 대학교에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의 정·부회장 입후보 자격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을 취득하고,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4학기 이상 6학기 이하의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단, 학생회가 선출되지 않아 재선을 진행할 경우 입후보 자격은 4학기 이상 7학기 이하의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③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1., 2018.01.26>

제61조(지도교수)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생애지도전담지도교수(CMP: Career Mentoring Professor)제도와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사제도 이행 증진을 위해 대학생활지도교수(LMP: Life Mentoring Professor)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15.03.01., 2019.11.05.>

제62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및 각종 규정을 지켜야 하며, 교육·연구 등 학교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4.03.01.>

제63조(간행물) 학생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1.>

제12장 포상과 징계

제64조(포상) ① 총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한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②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03.01.>

③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지도·상벌에 관한 규정」에 정한다. <신설 2014.03.01.><개정 2021.06.25.>

제65조 삭제 <2021.06.25.>

제66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01.>

③ 제1항에 따라 징계하려는 때에는 징계대상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03.01.>

④ 징계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지도·상벌에 관한 규정」에 정한다. <신설 2014.03.01.><개정 2021.06.25.>

제67조 삭제 <2014.03.01.>

제68조 삭제 <2014.03.01.>

제13장 등록금 (삭제 2014.03.01.)

제69조 삭제 <2014.03.01.>

제70조 삭제 <2014.03.01.>

제71조 삭제 <2014.03.01.>

제72조 삭제 <2014.03.01.>

제14장 장학금

제73조(장학금) ①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②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금지급규정」 및 「장학금지급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신설 2014.03.01.><개정 2021.06.25.>

제74조 삭제 <2021.06.25.>

제15장 직제

제75조(직제) 우리 대학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1.>

제16장 교원 및 교수회의

제76조(교원의 책임시수) ① 교원의 책임시수는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12시수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교원업적평가 규정」에서 정한다. <개정 2014.03.01., 2019.05.28., 2024.01.24.>

② 삭제 <2024.01.24.>

제76조의2(강사) ① 총장은「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01.24.>

[본조신설 2021.11.30.]

제77조(교수회의 설치) 우리 대학교에 전체교수회를 둔다. <개정 2014.03.01.>

제78조(교수회의 구성) 전체교수회는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3.01.>

제79조(소집) 총장은 전체교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소속 전임교원의 1/3 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1.>

제80조(기능) 전체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2016.05.19., 2019.11.05., 2020.09.09.>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삭제 <2019.11.05.>
5. 삭제 <2019.11.05.>
6. 삭제 <2019.11.05.>
7.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의 교수 대표 추천에 관한 사항

제81조(교수회의 의결) 전체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개정 2014.03.01.>

제17장 교무위원회 등

제82조(교무위원회의 설치) ① 우리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03.01.>

② 교무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교무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4.03.01.> <개정 2019.11.05.>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대학장, 각 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총장은 교원 중에서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03.01.> <개정 2026.08.12.>

④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4.03.01.>

제82조의2(그 밖의 위원회) ① 총장은 학교의 중요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 외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03.01.]

제82조의3(대학평의원회 설치) ① 우리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원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 규정」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9.09.]

제82조의4(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치) ① 개방이사 대상을 추천하기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9.09.]

제82조의5(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우리 대학교의 등록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9.09.]

제82조의6(기금운용심의회 설치) ① 우리 대학교의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 규정」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9.09.]

제83조 삭제 <2014.03.01.>

제84조 삭제 <2014.03.01.>

제18장 시간제 등록생

제85조 삭제 <2014.03.01.>

제86조 삭제 <2014.03.01.>

제87조 삭제 <2014.03.01.>

제88조 삭제 <2014.03.01.>

제89조(시간제 등록생) ① 제14조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우리 대학교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② 우리 대학교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과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③ 시간제 등록생 등록인원은 우리 대학교 해당연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03.01.>

④ 시간제 등록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1.>

제19장 공개강좌 등

제90조(공개강좌) ① 교양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3.01.>

② 공개강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 정한다. <개정 2014.03.01., 2021.06.25.>

제91조(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총장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의 요건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② 총장은 우리 대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표 3>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3.1., 2015.03.01., 2019.05.28.>

③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1.>

제20장 학칙개정

제92조(학칙의 개정) ① 학칙을 개정하려는 때에는 총장이 발의하고,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개정 2014.03.01.>

② 총장은 학칙 개정안을 7일 이상 공고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③ 삭제 <2013.02.01.>

제21장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등

제93조(학사운영규정)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1.>

제93조의2(각종 증명 발급) 졸업, 수료, 성적, 재학, 재적 등에 관하여 각종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3.01.]

제22장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제94조(산학협력단) ① 우리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14.03.01.>

② 산학협력단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1.>

제95조(학교기업) ① 우리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03.01.>

②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에 정한다. <개정 2014.03.01., 2021.06.25.>

제95조의2(감사) 총장은 우리 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3.01.]

부 칙

제1조(시행세칙)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6. 30.)

제1조(시행일) ① 이 변경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학칙 중 제3조(조직과 정원) (별표1) IT공학부, 글로벌리더학부, 국제어학부신설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8. 31.)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변경 당시의 사회복지학부, 글로벌리더학부, 국제어학부가 학부신설 및 모집단위 변경(의료보건학부, 국제비지니스학부, 사회과학부)으로 인해 변경 전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 시 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단, 2011년 이후 복학하여 재학하는 학생은 기존 학부의 전공과 변경된 학부의 전공 중 선택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2014년 이후에 복학하는 학생은 변경 또는 신설된 학부의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2009학년도 모집단위 전공 중 의료정보학, 아동·청소년 복지학, 노인복지학 및2010학년도 모집단위 전공 중 신소재공학,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 영어학, 일본어학, 중국어학, 러시아학, 글로벌행정학, 글로벌경영학은 2013년까지 입학당시의 학부 및 교육과정으로 존치 후 2014년부터 폐지한다.

③ 2009학년도 모집단위 전공 중 의료정보학, 아동·청소년 복지학, 노인복지학 및 2010학년도 모집단위 전공 중 신소재공학,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 영어학, 일본어학, 중국어학, 러시아학, 글로벌행정학, 글로벌경전공학생이 2014년 이후에 복학할 경우에는 각각 의료정보행정, 사회복지학, 첨단소재공학, 산업디자인학, 영미통상학, 일본통상학, 중국통상학, 러시아통상학, 경찰행정학, 기업경영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2010학년도 글로벌리더학부 세계종교학전공은 2011학년도 사회과학부로 소속학부를 변경한다.

부 칙(개정 2011. 8. 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2학년도 학부 및 학과(전공)명 변경에 따라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에 이 변경 학칙 시행에 따라 2012학년도 3월 1일부터 <표1>, <표2>, <표3>과 같이 변경된 학부 및 학과(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이전의 학부, 전공의 명칭으

로 제증명서, 학위증서 및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부 칙(개정 2012. 8. 0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특별편입학생의 경우 학과의 설치시기와 관계없이 학위를 수여 <별표3>할 수 있다 (근거: 대학선진화-7499 "건동대 운동부 특별편입학 관련 특별요청사항 승인 신청 회신")

② 건동대학생 특별편입에 따라 레저스포츠학과 및 태권도학과는 2012학년도 2학기부터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모두 개설하여야 한다.

부 칙(개정 2013. 2. 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3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인문학부 및 한방산업학부는 폐지하나, 2013학년도 신입학생들의 학사운영을 위하여 1년간 유예하며, 그 이후는 자동폐지되며 학부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학과를 배정하고, 학과선택을 마친 학생들의 경우 소속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4. 3. 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45조는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5. 3. 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종교문화콘텐츠학과, 법학과, 한방식품바이오학과, 첨단소재공학과, 의료정보행정학과의 재적생은 각각 종교문화학과, 법무법학과, 식품공학과, 항공재료공학과, 보건행정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학과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영어학과, 중국어학과, 일본어학과, 의약화학과, 생약자원개발학과, 신재생에너지학과, 자원순환환경공학과, 방재안전공학과, 골프과학과, 태권도경호학과, 스포츠건강의학과 재적생은 2018학년도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통합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1. 영어학과, 중국어학과, 일본어학과 재적생은 국제통상학과
2. 의약화학과와 생약자원개발학과 재적생은 의약바이오학과
3. 신재생에너지학과, 자원순환환경공학과, 방재안전공학과 재적생은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4. 예체능대학 골프과학과, 태권도경호학과와 의료보건대학 스포츠건강의학과 재적생은 체육학부 레저스포츠학과

제4조(단과대학, 학부 신설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의 항공학부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재적생은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예체능대학 연극영화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골프과학과, 레저스포츠학과, 태권도경호학과, 의료보건대학 스포츠건강의학과 재적생은 각각 예술학부 연극영화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체육학부 골프과학과, 레저스포츠학과, 태권도경호학과, 스포츠건강의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5조(수강신청학점 및 조기졸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9조제1항제1호는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전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16. 5. 19.)

제1조(시행일) ① 이 학칙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중 제3조(교육조직및 입학정원) 및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02. 0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시험)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9월 1일부터, <별표1>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 01. 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교육조직 및 입학정원) 및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소속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에 따라 단과대학이 변경된 학과의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18학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인문사회과학대학 종교문화학과, 한국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보육상담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찰행정학과, 법무법학과 재적생은 각각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학과, 한국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보육상담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찰행정학과, 법무법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이공대학 의생명과학과, 식품공학과 재적생은 각각 융합과학기술대학 의생명과학과, 식품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예술학부 연극영화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재적생은 각각 사회문화대학 연극영화학과, 융합과학기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체육학부 경호학과 재적생은 융합과학기술대학 체육학부 경호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학과의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18학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 및 재학 당시의 단과대학 및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

1. 이공대학 의약바이오학과, 의료공학과, 컴퓨터시스템공학과 재적생은 각각 융합과학기술대학 제약공학과, 생체의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이공대학 메카트로닉스학과 재적생은 항공대학 항공기계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학과 존속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공대학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재적생은 2018학년도 3월 1일부터 융합과학기술대학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로 소속을 변경하고 2020학년도(2021년 2월말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복학 또는 재입학시 해당 학년이 없을 경우에는 융합과학기술대학 창의융합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또는 소방방재공학전공으로 선택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② 체육학부 레저스포츠학과 재적생은 2018학년도 3월 1일부터 융합과학기술대학 레저스포츠학과로 소속을 변경하고 2020학년도(2021년 2월말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복학 또는 재입학시 해당 학년이 없을 경우에는 융합과학기술대학 체육학부 스포츠지도전공 또는 스포츠산업전공으로 선택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③ 입학 당시의 학과로 졸업을 희망하나 학과 존속기간까지 졸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변경전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19. 5.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교육조직 및 입학정원) 및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학과의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19학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1. 사회문화대학 한국어학과 재적생은 사회문화대학 한국어교육문화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융합과학기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체육학부 경호학전공 재적생은 각각 융합과학기술대학 융합디자인학과, 체육학부 무예경호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3. 의료보건대학 뷰티헬스학과 재적생은 의료보건대학 의료뷰티케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2018학년도 이전 해당 학과에 입학한 재적생은 해당 년도 졸업이수기준에 따른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은 대체 교과목을 지정하여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조(학과 모집중단에 따른 경과 조치) ① 이 학칙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모집중단 된 사회문화대학 아동보육상담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법무법학과의 존속기간은 「구조조정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1.05.>

② 제1항의 해당 학과에 2018학년도 이전 입학하여 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복학이나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를 제외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에 전과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해당자는 전과가 허용된 학과(전공), 학년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해당자는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복수전공, 부전공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19. 11. 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 02. 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소속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은 소속(단과대학)이 변경된 학과(전공)의 재학생 및 신·편입생은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융합과학기술대학 체육학부 스포츠지도전공, 체육학부 스포츠산업전공, 체육학부 무예경호전공, 레저스포츠학과 재학생은 사회문화대학 체육학부 스포츠지도전공, 체육학부 스포츠산업전공, 체육학부 무예경호전공, 레저스포츠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융합과학기술대학 체육학부 스포츠지도전공, 체육학부 스포츠산업전공, 체육학부 무예경호전공, 레저스포츠학과 복학 및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도 제1호와 같이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20. 09. 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교육조직 및 입학정원) 및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학과의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21학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1.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학과, 체육학부 스포츠지도전공, 체육학부 스포츠산업전공, 체육학부 무예경호전공 재적생은 각각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재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산업학과, 무예경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융합과학기술대학 제약공학과, 생체의공학과, 창의융합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창의융합공학부 소방방재공학전공, 말산업융합학과 재적생은 각각 융합과학기술대학 의약바이오학과, 의료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소방방재학과, 말산업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항공대학 항공재료공학과 재적생은 항공대학 신소재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2021학년도 이전 해당 학과에 입학한 재적생은 입학한 년도의 졸업이수기준에 따른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은 대체 교과목 지정 등을 통해 변경된 교육과정도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20. 10. 0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 06. 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1. 30.>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과대학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에 따라 단과대학 및 학과명칭이 변경된 학과의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22학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단과대학 및 학과명으로 졸업할 수 있다.

1. 융합과학기술대학 식품공학과 재적생은 융합과학기술대학 식품산업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항공대학 신소재공학과 재적생은 융합과학기술대학 반도체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융합과학기술대학 식품공학과, 항공대학 신소재공학과로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도 제1항과 같이 적용한다.

제3조(학과 모집중단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모집중단 된 융합과학대학 의료공학과의 존속기간은 「구조조정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해당 학과에 2021학년도 이전 입학하여 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복학이나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를 제외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에 전과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해당자는 전과가 허용된 학과, 학년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과 허용된 학과의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해당자는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복수전공, 부전공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부칙<2022. 07. 01.>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개정사항 및 부칙 제2조(단과대학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23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과대학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에 따라 2023학년도 모집단위 변경 전 각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변경(통합)된 학부(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단과대학 및 학과명으로 졸업할 수 있다.

② 모집단위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과대학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 융합과학기술대학 재적생은 융합과학대학 재적생으로 본다.
2. 학과 소속 단과대학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가. 사회문화대학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재적생은 융합과학대학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산업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나. 융합과학기술대학 융합디자인학과 재적생은 사회문화대학 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 융합과학기술대학 소방방재학과 재적생은 사회문화대학 소방안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라. 의료보건대학의 AI의료공학과 재적생은 융합과학대학 의료기기산업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모집단위 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가. 식품산업학과, 의약바이오학과 재적생은 식품제약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나. 항공기계공학과, 스마트운행체학과 재적생은 무인항공기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학과 명칭 변경 및 모집단위가 학부로 변경됨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가. 종교문화재학과, 한국어교육문화학과 재적생은 종교문화학부 종교문화재학과, 종교문화학부 한국어교육문화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나. 융합디자인학과 재적생은 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 소방방재학과 재적생은 소방안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라. 무예경호학과 재적생은 경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마. 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재적생은 전기반도체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전기반도체컴퓨터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전기반도체컴퓨터공학부 반도체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바. 의생명과학과, 식품산업학과, 의약바이오학과, 의료뷰티케어학과, AI의료공학과 재적생은 바이오산업학부 의생명과학과, 바이오산업학부 식품제약학과, 바이오산업학부 뷰티케어학과, 바이오산업학부 의료기기산업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사. 말산업학과 재학생은 운동레저학부 말산업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2023. 02.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8.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1. 27.>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2024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통합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에 따라 통합된 학과의 재적생은 2027학년도 3월 1일부터 통합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보고, 학과명칭이 변경된 학과의 202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24학년도 3월 1일부터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단과대학 및 학과명으로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24.01.24.>
② 학과통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기반도체컴퓨터학부 전기전자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재적생은 전기반도체컴퓨터학부 전기반도체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바이오산업학부 식품제약학과, 뷰티케어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재적생은 바이오산업학부 융합바이오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③ 학과명칭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사학과 재적생은 국가안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바이오산업학부 의생명과학과 재적생은 바이오산업학부 생명과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학과 모집중단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모집중단 된 사회문화대학 연극영화학과, 디자인학과, 사회복지학과는 우리대학 「구조조정 규정」의 제15조에 따라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해당 학과에 2023학년도 이전 입학하여 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복학이나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를 제외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에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해당자는 전과가 허용된 학과, 학년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과 허용된 학과의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해당자는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복수전공, 부전공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부칙<2024. 01.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6. 18.>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5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에 따라 202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28학년도 3월 1일자부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학과명으로 졸업할 수 있다.

1. 전기반도체컴퓨터학부 컴퓨터공학과, 전기반도체컴퓨터학부 전기반도체공학과 재적생은 전기반도체컴퓨터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바이오산업학부 생명과학과, 바이오산업학부 융합바이오학과 재적생은 바이오산업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지역환경산업학과, 글로컬융합사회학과 재적생은 글로컬융합인재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학부 모집단위에서 학과 모집 단위로 변경된 학부의 휴학 및 제적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08.30>

1. 전기반도체컴퓨터공학부의 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복학이나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전기반도체컴퓨터공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2. 바이오산업학부의 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복학이나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바이오산업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제3조(학부 통합 모집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에 따라 202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25학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각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학과명으로 졸업할 수 있다.

1. 스포츠지도학과 재적생은 스포츠경영학부 스포츠지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스포츠산업학과 재적생은 스포츠경영학부 스포츠산업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에 따라 202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25학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각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과명으로 졸업할 수 있다.

1. 국가안보학과 재적생은 드론봇군사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보건행정학과 재적생은 보건복지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5조(학과 모집중단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모집중단 된 사회문화대학 소방안전학과의 존속기간은 「구조조정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해당 학과에 2024학년도 이전 입학하여 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복학이나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를 제외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에 전과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해당자는 전과가 허용된 학과, 학년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과 허용된 학과의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해당자는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복수전공, 부전공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부칙<2024. 08.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02.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08. 14.>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교육조직 및 입학정원), <별표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및 부칙 제2조(단과대학 통합, 명칭 변경 및 학과 명칭,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26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과대학 통합, 명칭 변경 및 학과 명칭,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에 따라 통합, 명칭

및 소속이 변경된 단과대학의 202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26학년도 3월 1일부터 변경된 단과대학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단과대학 및 학과명으로 졸업할 수 있다.

② 단과대학 통합 및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 사회문화대학, 교양대학 각 학과의 재적 중인 학생은 통합된 사회문화교양대학 각 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본다.

1.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학부, 종교문화학부 종교문화재학과, 종교문화학부 한국어교육문화학과, 경찰행정학과, 드론봇군사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재적생은 사회문화교양대학 종교문화학부, 종교문화학부 종교문화유산학과, 종교문화학부 한국어교육문화학과, 경찰행정학과, 드론봇군사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교양대학 자율전공학부 재적생은 사회문화교양대학 자율전공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3. 사회문화대학 법무법학과, 디자인학과, 사회복지학과, 연극영화학과, 소방안전학과 재적생은 사회문화교양대학 법무법학과, 디자인학과, 사회복지학과, 연극영화학과, 소방안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③ 단과대학, 학과 명칭 및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 융합과학대학, 사회문화대학 각 학과의 재적 중인 학생들은 체육대학 각 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본다.

1. 융합과학대학 운동레저학부, 운동레저학부 말산업학과, 운동레저학부 생활체육학과, 운동레저학부 축구학과 재적생은 체육대학 운동레저학부, 운동레저학부 말산업학과, 운동레저학부 생활체육학과, 운동레저학부 축구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융합과학대학 운동레저학부 골프과학과 재적생은 체육대학 골프과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융합과학대학 스포츠경영학부, 스포츠경영학부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경영학부 스포츠산업학과 재적생은 체육대학 스포츠경영학부,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사회문화대학 경호학과 재적생은 체육대학 스포츠과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④ 단과대학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 융합과학대학 각 학과의 재적 중인 학생들은 의료보건대학 각 학과의 재적생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본다.

1. 융합과학대학 바이오산업학과 재적 중인 학생들은 의료보건대학 바이오산업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융합과학대학 바이오산업학부, 바이오산업학부 식품제약학과, 바이오산업학부 뷰티케어학과, 바이오산업학부 의료기기산업학과, 바이오산업학부 생명과학과, 바이오산업학부 융합바이오학과 재적생은 의료보건대학 바이오산업학부, 바이오산업학부 식품제약학과, 바이오산업학부 뷰티케어학과, 바이오산업학부 의료기기산업학과, 바이오산업학부 생명과학과, 바이오산업학부 융합바이오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⑤ 단과대학 및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 융합과학대학, 항공대학 각 학과의 재적 중인 학생들은 융합항공대학 각 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항공서비스학과, 무인항공기계학과, 항공정비학과 재적생은 융합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글로벌항공서비스학과, 기계항공우주공학과, 항공정비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2. 융합과학대학 전기반도체컴퓨터공학과 재적생은 융합항공대학 전기반도체컴퓨터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융합과학대학 전기반도체컴퓨터학부, 전기반도체컴퓨터학부 반도체공학과, 전기반도체컴퓨터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전기반도체컴퓨터학부 컴퓨터공학과, 전기반도체컴퓨터학부 전기반도체공학과 재적생은 융합항공대학 전기반도체컴퓨터학부, 전기반도체컴퓨터학부 반도체공학과, 전기반도체컴퓨터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전기반도체컴퓨터학부 컴퓨터공학과, 전기반도체컴퓨터학부 전기반도체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융합과학대학 의료공학과 재적생은 융합항공대학 의료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2025. 11. 1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05. 0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부칙의 개정) ① 2022. 7. 1. 개정 학칙의 부칙 제2조(단과대학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

치) 제2항 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마. 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재적생은 전기반도체컴퓨터학부 컴퓨터공학과, 전기반도체컴퓨터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전기반도체컴퓨터학부 반도체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2024. 6. 18. 개정 학칙의 부칙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학과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② 학부 모집단위에서 학과 모집 단위로 변경된 학부의 휴학 및 제적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08.30> 1. 전기반도체컴퓨터학부의 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복학이나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전기반도체컴퓨터공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2. 바이오산업학부의 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복학이나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바이오산업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부칙<2026. 00. 0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7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과대학,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에 따라 202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27학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단과대학 및 학과명으로 졸업할 수 있다.

1. 사회문화교양대학 드론봇군사학과 재적생은 항공대학 드론봇군사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의료보건대학 바이오산업학과 재적생은 AI융합대학 바이오융합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융합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글로벌항공서비스학과, 항공정비학과 재적생은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글로벌항공서비스학과, 항공정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융합항공대학 기계항공우주공학과 재적생은 AI융합대학 기계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5. 융합항공대학 전기반도체컴퓨터공학과 재적생은 AI융합대학 전기반도체컴퓨터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6. 융합항공대학 스마트농산림학과 재적생은 AI융합대학 스마트농산림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7. 융합항공대학 전기반도체컴퓨터학부의 반도체공학과, 전기반도체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재적생은 AI융합대학 전기반도체컴퓨터학부의 반도체공학과, 전기반도체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8. 융합항공대학 의료공학과 재적생은 AI융합대학 의료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9. 글로컬인재대학 글로컬융합인재학과 재적생은 평생학습대학 New-Start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10. 글로컬인재대학 글로컬융합사회학과 재적생은 평생학습대학 글로컬융합사회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11. 글로컬인재대학 지역환경산업학과 재적생은 평생학습대학 지역환경산업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12. 글로벌K-컬처대학 글로벌사회문화학과 재적생은 국제대학 한국어학과, 경영학과 중 학생이 선택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13. 글로벌K-컬처대학 글로벌공학과 재적생은 국제대학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중 학생이 선택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학부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에 따라 202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27학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단과대학 및 학과명으로 졸업할 수 있다.

1. 사회문화교양대학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재적생은 사회문화교양대학 AI융합디자인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2. 체육대학 운동레저학부 재적생은 체육대학 스포츠산업학부, 스포츠과학부 중 학생이 선택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3. 체육대학 운동레저학부 말산업학과, 체육대학 운동레저학부 생활체육학과 재적생은 체육대학 스포츠과학

부 재적생으로 본다.
4. 체육대학 운동레저학부 축구학과 재적생은 체육대학 스포츠산업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5. 체육대학 골프과학과 재적생은 체육대학 스포츠산업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6. 체육대학 스포츠지도학과 재적생은 체육대학 스포츠과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7. 체육대학 스포츠산업학과 재적생은 체육대학 스포츠산업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8. 체육대학 스포츠가라테학과 재적생은 체육대학 스포츠과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9. 체육대학 스포츠경영학부 재적생은 체육대학 스포츠산업학부, 체육대학 스포츠과학부 중 학생이 선택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표1>

2009학년도(변경전)		2012학년도(변경후)	
학부	전공	학부	학과
의료공학부	의료공학	의료공학부	의료공학과
	의료정보학	의료보건학부	의료정보행정학과
한방산업학부	한방식품공학	한방산업학부	한방식품공학과
	한방자원개발학		한방자원개발학과
에너지자원공학부	대체에너지개발학	에너지자원공학부	신재생에너지학과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건강학	의료보건학부	스포츠건강의학과
	골프과학	문화스포츠학부	골프과학과
사회복지학부	아동청소년복지학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		사회복지학과

<표2>

2010학년도(변경전)		2012학년도(변경후)	
학부	전공	학부	학과
의료공학부	의료공학	의료공학부	의료공학과
	의료정보학	의료보건학부	의료정보행정학과
	의생명공학	융합과학부	의생명과학과
한방산업학부	한방식품공학	한방산업학부	한방식품공학과
	한방자원개발학		한방자원개발학과
에너지자원공학부	대체에너지개발학	에너지자원공학부	신재생에너지학과
	신소재개발학		첨단소재공학과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건강의학	의료보건학부	스포츠건강의학과
	골프과학	문화스포츠학부	골프과학과
	레저스포츠학		레저스포츠학과
사회복지학부	아동청소년학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		
IT공학부	정보보안공학	의료공학부	컴퓨터시스템공학과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	문화스포츠학부	산업디자인학과
글로벌리더학부	글로벌행정학	사회과학부	경찰행정학과
	글로벌경영학		기업경영학과
	세계종교학	인문학부	세계종교학과
국제어학부	영어학	국제비지니스학부	영미통상학과
	일본어학		일본통상학과
	중국어학		중국통상학과
	러시아어학		러시아통상학과

<표3>

2011학년도(변경전)		2012학년도(변경후)	
학부	전공	학부	학과
의료공학부	의료공학	의료공학부	의료공학과
	의생명공학	융합과학부	의생명과학과
한방산업학부	한방식품공학	한방산업학부	한방식품공학과
	한방자원개발학		한방자원개발학과
에너지자원공학부	대체에너지개발학	에너지자원공학부	신재생에너지학과
	첨단소재공학		첨단소재공학과
	자원순환공학		자원순환환경공학과
IT공학부	정보보안공학	의료공학부	컴퓨터시스템공학과
	산업디자인학	문화스포츠학부	산업디자인학과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건강의학	의료보건학부	스포츠건강의학과
	골프과학	문화스포츠학부	골프과학과
	레저스포츠학		레저스포츠학과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과
	경찰행정학		경찰행정학과
	기업경영학		기업경영학과
	세계종교학	인문학부	세계종교학과
국제비지니스학부	영미통상학	국제비지니스학부	영미통상학과
	중국통상학		중국통상학과
	일본통상학		일본통상학과
	러시아통상학		러시아통상학과
의료보건학부	간호학	의료보건학부	간호학과
	작업치료학		작업치료학과
	의료정보행정학		의료정보행정학과

2013학년도	
학부(변경전)	대학(변경후)
의료공학부	이공대학
융합과학부	
한방산업학부	
에너지자원공학부	
문화스포츠학부	예체능대학
사회과학부	인문사회과학대학
인문학부	
국제비지니스학부	
의료보건학부	의료보건대학

<별표 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개정 2016.05.19., 2017.02.02., 2018.01.26., 2019.05.28., 2019.11.05., 2020.09.09., 2021.11.30., 2022.07.01., 2023.02.20., 2023.11.27., 2024.01.24., 2024.06.18. 2024.08.30., 2025.08.14., 2025.11.17., 2026.00.00.>

학부	2009학년도		학부	2010학년도	
	전공	입학정원		전공	입학정원
의료공학부	의료공학	30	의료공학부	의료공학	30
	의료정보학	30		의료정보학	30
한방산업학부	한방식품공학	30		의생명공학	30
	한방자원개발학	30	한방산업학부	한방식품공학	30
에너지자원공학부	대체에너지개발학	30		한방자원개발학	30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건강학	30	에너지자원공학부	대체에너지개발학	30
	골프과학	20		신소재공학	30
사회복지학부	아동·청소년복지학	30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건강의학	20
	노인복지학	30		골프과학	20
계	9개 전공	260		레저스포츠학	30
			사회복지학부	아동청소년학	30
				노인복지학	30
			IT공학부	정보보안공학	30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	30
			글로벌리더학부	글로벌행정학	30
				글로벌경영학	30
				세계종교학	20
			국제어학부	영어학	20
				일본어학	20
				중국어학	20
				러시아어학	20
			계	21개 전공	560

학부	2011학년도		학부	2012학년도	
	전공	입학 정원		학과	입학 정원
의료공학부	의료공학	28	의료공학부	의료공학과	40
	의생명공학	28		컴퓨터시스템공학과	40
한방산업학부	한방식품공학	28		메카트로닉스학과	40
	한방자원개발학	28	융합과학부	의생명과학과	40
에너지자원공학부	대체에너지개발학	23		의약화학과	30
	첨단소재공학	23		방재안전과학과	40
	자원순환공학	20	한방 산업학부	한방식품공학과	40
IT공학부	정보보안공학	30		한방자원개발학과	40
	산업디자인학	30	에너지 자원공학부	신재생에너지학과	40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건강의학	20		첨단소재공학과	40
	골프과학	20		자원순환환경공학과	40
	레저스포츠학	30	문화 스포츠학부	산업디자인학과	40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	35		방송연예학과	40
	경찰행정학	30		골프과학과	30
	기업경영학	20		레저스포츠학과	50
	세계종교학	5	사회 과학부	사회복지학과	50
국제비지니스학부	영미통상학	20		경찰행정학과	50
	중국통상학	20		기업경영학과	50
	일본통상학	20		법학과	40
	러시아통상학	10	인문학부	세계종교학과	20
의료보건학부	간호학	25		한국학과	40
	작업치료학	20	국제 비즈니스 학부	영미통상학과	40
	의료정보행정학	20		중국통상학과	40
계	22개 전공	533		일본통상학과	40
				러시아통상학과	20
			의료 보건학부	간호학과	25
				작업치료학과	20
				의료정보행정학과	45
				스포츠건강의학과	30
			계	28개 학과	1,100

단과대학 / 학부	2013학년도 학과(부)		입학정원	단과대학 / 학부	2014학년도 학과	입학정원
인문사회과학대학	인문학부	세계종교학과	10	인문사회과학대학	종교문화콘텐츠학과	10
		한국학과	30		한국학과	20
	기업경영학과		40		영어학과	25
	중국통상학과		40		중국어학과	25
	일본통상학과		30		일본어학과	25
	영미통상학과		40		경영학과	38
	러시아통상학과		10		국제통상학과	25
	경찰행정학과		40		법학과	30
	법학과		37		경찰행정학과	38
	사회복지학과		40		사회복지학과	38
이공대학	의약화학과		30	이공대학	의생명과학과	30
	의생명과학과		40		의약화학과	30
	방재안전과학과		40		한방식품바이오학과	35
	한방산업학부	한방식품산업학과	40		생약자원개발학과	30
		한방소재산업학과	40		의료공학과	40
	첨단소재공학과		40		컴퓨터시스템공학과	40
	신재생에너지학과		40		메카트로닉스학과	35
	자원순환환경공학과		30		신재생에너지학과	37
	컴퓨터시스템공학과		40		첨단소재공학과	38
	의료공학과		40		자원순환환경공학과	25
	메카트로닉스학과		40		방재안전공학과	30
예체능대학	산업디자인학과		40	예체능대학	산업디자인학과	35
	방송연예학과		40		연극영화학과	30
	태권도학과		20		골프과학과	30
	골프과학과		30		레저스포츠학과	50
	레저스포츠학과		60		태권도경호학과	20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30	의료보건대학	의료정보행정학과	30
	작업치료학과		30		스포츠건강의학과	30
	의료정보행정학과		30		간호학과	65
	스포츠건강의학과		30		작업치료학과	40
	임상병리학과		30		임상병리학과	50
계	31개 학과		1,077	항공학부	항공운항학과	10
					항공정비학과	10
				계	33개 학과	1,044

단과대학 / 학부	2015학년도		단과대학 / 학부	2016학년도	
	학과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인문사회과학대학	종교문화학과	10	인문사회과학대학	종교문화학과	10
	한국학과	15		한국학과	15
	경영학과	40		경영학과	40
	국제통상학과	40		국제통상학과	40
	법무법학과	30		법무법학과	30
	경찰행정학과	40		경찰행정학과	40
	사회복지학과	39		사회복지학과	39
	아동보육상담학과	40		아동보육상담학과	40
이공대학	의생명과학과	35	이공대학	의생명과학과	35
	의약바이오학과	40		의약바이오학과	40
	식품공학과	35		식품공학과	35
	의료공학과	35		의료공학과	35
	컴퓨터시스템공학과	40		컴퓨터시스템공학과	40
	메카트로닉스학과	40		메카트로닉스학과	40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60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60
의료보건대학	보건행정학과	30	의료보건대학	보건행정학과	30
	간호학과	65		간호학과	65
	작업치료학과	40		작업치료학과	40
	임상병리학과	50		임상병리학과	50
	뷰티헬스학과	30		뷰티헬스학과	30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30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30
	항공정비학과	35		항공정비학과	35
	항공재료공학과	40		항공재료공학과	40
	항공서비스학과	40		항공서비스학과	40
예술학부	연극영화학과	30	예술학부	연극영화학과	30
	산업디자인학과	35		산업디자인학과	35
체육학부	레저스포츠학과	50	체육학부	레저스포츠학과	50
	경호학과	30		경호학과	30
계	28개 학과	1,044	계	28개 학과	1,044

단과대학 / 학부	2017학년도	
	학과	입학정원
인문사회과학대학	종교문화학과	10
	한국학과	15
	경영학과	40
	국제통상학과	40
	법무법학과	30
	경찰행정학과	40
	사회복지학과	39
	아동보육상담학과	40
이공대학	의생명과학과	35
	의약바이오학과	40
	식품공학과	35
	의료공학과	35
	컴퓨터시스템공학과	40
	메카트로닉스학과	40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60
의료보건대학	보건행정학과	30
	간호학과	65
	작업치료학과	40
	임상병리학과	50
	뷰티헬스학과	30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30
	항공정비학과	35
	항공재료공학과	40
	항공서비스학과	40
예술학부	연극영화학과	30
	산업디자인학과	35
체육학부	레저스포츠학과	50
	경호학과	30
계	28개 학과	1,044

단과대학 / 학부	2018학년도		
	학과		입학정원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학과		10
	한국학과		10
	사회복지학과		40
	아동보육상담학과		25
	경영학과		25
	국제통상학과		25
	경찰행정학과		40
	법무법학과		22
	연극영화학과		33
융합과학기술대학	의생명과학과		30
	제약공학과		30
	식품공학과		28
	생체의공학과		35
	컴퓨터공학과		35
	창의융합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25
		소방방재공학전공	25
	산업디자인학과		30
	말산업융합학과		25
	체육학부	스포츠지도전공	25
		스포츠산업전공	25
		경호학전공	25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65
	작업치료학과		40
	임상병리학과		50
	보건행정학과		30
	뷰티헬스학과		30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30
	항공정비학과		35
	항공서비스학과		40
	항공기계공학과		40
	항공재료공학과		40
계	4개 단과대학, 26개 학과, 2개 학부 5개 전공		968

단과대학	2019학년도		
	학과		입학정원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학과		10
	한국어교육문화학과		10
	사회복지학과		40
	경찰행정학과		45
	연극영화학과		38
융합과학기술대학	의생명과학과		30
	제약공학과		30
	식품공학과		28
	생체의공학과		40
	컴퓨터공학과		40
	창의융합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30
		소방방재공학전공	30
	융합디자인학과		30
	말산업융합학과		25
	체육학부	스포츠지도전공	30
		스포츠산업전공	30
		무예경호전공	30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98
	작업치료학과		40
	임상병리학과		50
	보건행정학과		33
	의료뷰티케어학과		30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30
	항공정비학과		40
	항공서비스학과		46
	항공기계공학과		45
	항공재료공학과		40
계	4개 단과대학, 22개 학과, 2개 학부 5개 전공		968

단과대학	2020학년도		
	학과		입학정원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학과		10
	한국어교육문화학과		10
	사회복지학과		40
	경찰행정학과		45
	연극영화학과		38
융합과학기술대학	의생명과학과		30
	제약공학과		30
	식품공학과		28
	생체의공학과		40
	컴퓨터공학과		40
	창의융합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30
		소방방재공학전공	30
	융합디자인학과		30
	말산업융합학과		25
	체육학부	스포츠지도전공	30
		스포츠산업전공	30
		무예경호전공	30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98
	작업치료학과		40
	임상병리학과		50
	보건행정학과		33
	의료뷰티케어학과		30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30
	항공정비학과		40
	항공서비스학과		46
	항공기계공학과		45
	항공재료공학과		40
계	4개 단과대학, 22개 학과, 2개 학부 5개 전공		968

단과대학	2021학년도	
	학과	입학정원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재학과	10
	한국어교육문화학과	10
	사회복지학과	35
	경찰행정학과	40
	연극영화학과	35
	스포츠지도학과	30
	스포츠산업학과	30
	무예경호학과	25
융합과학 기술대학	의생명과학과	20
	의약바이오학과	20
	식품공학과	20
	의료공학과	30
	컴퓨터공학과	40
	전기전자공학과	30
	소방방재학과	30
	융합디자인학과	25
	말산업학과	20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98
	작업치료학과	40
	임상병리학과	50
	보건행정학과	30
	의료뷰티케어학과	20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30
	항공정비학과	35
	항공서비스학과	43
	항공기계공학과	45
	신소재공학과	30
계	4개 단과대학, 27개 학과	871

단과대학	2022학년도			
	학과	입학정원		
		모집정원 기존	모집정원 변경	5% 모집정지 인원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재학과	10	5	5
	한국어교육문화학과	10	5	5
	경찰행정학과	40	40	
	사회복지학과	35	35	
	연극영화학과	35	35	
	스포츠지도학과	33	33	
	스포츠산업학과	30	30	
	무예경호학과	30	30	
	군사학과	25	25	
융합과학 기술대학	의생명과학과	20	15	5
	의약바이오학과	20	15	5
	식품산업학과	20	15	5
	컴퓨터공학과	40	35	5
	전기전자공학과	30	25	5
	소방방재학과	30	30	
	융합디자인학과	25	25	
	말산업학과	20	15	5
	반도체공학과	25	25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98	98	
	작업치료학과	40	40	
	임상병리학과	50	50	
	보건행정학과	30	30	
	의료뷰티케어학과	20	16	4
	AI의료공학과	25	25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30	30	
	항공정비학과	35	35	
	항공서비스학과	45	45	
	항공기계공학과	45	45	
	스마트운행체학과	25	25	
계	4개 단과대학, 30개 학과	921	877	44

※ 학과 모집중단: 의료공학과

단과대학	2022학년도 모집단위	단과대학	2023학년도 모집단위		입학정원		변경 내용	
	학과		학부/학과		모집정원	모집유보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재학과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학부	종교문화재학과	10		학부 통합모집	
	한국어교육문화학과			한국어교육문화학과				
	연극영화학과		연극영화학과		25	3		
융합과학기술대학	융합디자인학과		디자인학과		20		학과명 변경	
사회문화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25	1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30	1		
융합과학기술대학	소방방재학과		소방안전학과		25	2	학과명 변경	
사회문화대학	군사학과		군사학과		20			
	무예경호학과		경호학과		24	1	학과명 변경	
융합과학기술대학	컴퓨터공학과	융합과학대학	전기반도체 컴퓨터학부	컴퓨터공학과	45	6	학부 통합모집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5		
	반도체공학과			반도체공학과		5		
	의생명과학과		바이오산업 학부	의생명과학과	40	3		학부 통합모집
	식품산업학과			식품제약학과		9	학과명 변경 학과 통합	
	의약바이오학과							
	의료뷰티케어학과			뷰티케어학과		3	학과명 변경	
의료보건대학	AI의료공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학과명 변경	
사회문화대학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25	1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산업학과		25			
융합과학기술대학	말산업학과		운동레저학부	말산업학과	55	2		학부 통합모집
	-			생활체육학과			신설	
	-			축구학과			신설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111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33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과		50			
	보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25	2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30			
	항공서비스학과		항공서비스학과		35	3		
	항공기계공학과		무인항공기계학과		30	5	학과명 변경 학과 통합	
	스마트운행체학과							
	항공정비학과		항공정비학과		30	2		
-		Bio-PRIDE 공유대학	제약바이오학과		-		※ 신설된 학과 자체의 입학정원은 없으며 우리 대학교 재학생들이 부전공, 복수전공 형태로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음	
			천연물소재학과					
			화장품산업학과					
			정밀의료·의료기기학과					
교양대학	-	교양대학	자율전공학부		45		신설	
		계	6개 단과대학, 5개 학부, 33개 학과		758	54		

단과대학	2023학년도 모집단위		단과대학	2024학년도 모집단위		입학정원		변경 내용
	학부/학과			학부/학과		모집정원	모집유보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학부	종교문화재학과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학부	종교문화재학과	15		
		한국어교육문화학과			한국어교육문화학과			
	연극영화학과					-		학과 모집중단
	디자인학과					-		학과 모집중단
	사회복지학과					-		학과 모집중단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35	5	
	소방안전학과			소방안전학과		25	2	
	군사학과			국가안보학과		20		학과 명칭변경
	경호학과			경호학과		24	1	
융합과학대학	전기반도체컴퓨터학부	컴퓨터공학과	융합과학대학	전기반도체컴퓨터학부	컴퓨터공학과	42	6	
		전기전자공학과			전기반도체공학과		10	학과 통합
		반도체공학과						
	바이오산업학부	의생명과학과		바이오산업학부	생명과학과	35	5	학과 명칭변경
		식품제약학과			융합바이오학과		10	학과 통합
		뷰티케어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25	1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산업학과		25		
	운동레저학부	말산업학과		운동레저학부	말산업학과	75	2	
		생활체육학과			생활체육학과			
		축구학과			축구학과			
		-			골프과학과			학과 신설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119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33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과		50		
	보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25	2	
				뷰티메디컬학과		20		학과 신설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30		
	항공서비스학과			항공서비스학과		35	3	
	무인항공기계학과			무인항공기계학과		30	5	
	항공정비학과			항공정비학과		30	2	
Bio-PRIDE 공유대학[1]	제약바이오학과		Bio-PRIDE 공유대학	제약바이오학과		-		
	천연물소재학과			천연물소재학과				
	화장품산업학과			화장품산업학과				
	정밀의료·의료기기학과			정밀의료·의료기기학과				
				시스템반도체학과				학과 신설
				배터리산업학과				학과 신설
교양대학	자율전공학부		교양대학	자율전공학부		55		
글로컬인재대학[2]			글로컬인재대학	지역환경산업학과		5		학과 신설
				글로컬융합사회학과		5		학과 신설
계			계	7개 단과대학, 5개 학부, 33개 학과		758	54	

1) Bio-PRIDE 공유대학에 속한 학과는 자체 입학정원이 없으며 우리 대학교 재학생들이 부전공, 복수전공 형태로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음

2) 글로컬인재대학에 속한 학과는 성인학습자 대상 정원내 전담학과로 설치되었음

단과대학	2024학년도 모집단위		단과대학	2025학년도 모집단위		입학정원		변경 내용
	학부/학과			학부/학과		모집정원	모집유보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학부	종교문화재학과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학부	종교문화재학과	15		
		한국어교육문화학과			한국어교육문화학과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30	5	
	소방안전학과			-				학과 모집중단
	국가안보학과			드론봇군사학과		25		학과 명칭변경
	경호학과			경호학과		24	1	
	-			만화애니메이션학과		20		신설
융합과학대학	전기반도체컴퓨터학부	컴퓨터공학과	융합과학대학	전기반도체컴퓨터공학과	컴퓨터전공	30	6	학과 모집단위 변경, 전공 신설
		전기반도체공학과			전기반도체전공		10	
	바이오산업학부	생명과학과		바이오산업학과	생명과학전공	20	5	학과 모집단위 변경, 전공 신설
		융합바이오학과			융합바이오전공		10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경영학부	스포츠지도학과	50	1	학부 통합 모집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운동레저학부	말산업학과		운동레저학부	말산업학과	80	2	
		생활체육학과			생활체육학과			
		축구학과			축구학과			
		골프과학과			골프과학과		2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159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33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과		50		
	보건행정학과			보건복지학과		25	2	학과 명칭변경
	뷰티메디컬학과			뷰티메디컬학과		20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20		
	항공서비스학과			항공서비스학과		30	3	
	무인항공기계학과			무인항공기계학과		25	5	
	항공정비학과			항공정비학과		25	2	
교양대학	자율전공학부		교양대학	자율전공학부		45		
글로컬인재대학 1)	지역환경산업학과		글로컬인재대학	글로컬융합인재학과	지역환경산업전공	32		학과 모집단위 변경, 전공 신설
	글로컬융합사회학과				글로컬융합사회전공			
	-				창업경영전공			
-	-		글로벌K-컬처대학 2)	글로벌사회문화학과	한국어전공, 경영전공, 영화전공, 디자인전공, 체육전공, 항공서비스전공	-		단과대학 및 정원외 전담학과 신설 (외국인유학생 대상)
				글로벌공학과	컴퓨터반도체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		
				글로벌생명과학과	바이오융합전공, 뷰티메디컬전공, 간호학전공	-		

단과대학	2024학년도 모집단위	단과대학	2025학년도 모집단위	입학정원		변경 내용
	학부/학과		학부/학과	모집정원	모집유보	
Bio-PRIDE 공유대학 3)	제약바이오학과	Bio-PRIDE 공유대학	제약바이오학과	-		
	천연물소재학과		천연물소재학과			
	화장품산업학과		화장품산업학과			
	정밀의료·의료기기학과		정밀의료·의료기기학과			
	-		시스템반도체학과			
	-		배터리산업학과			
계		계	8개 단과대학, 4개 학부, 33개 학과	758	54	

1) 글로컬인재대학에 속한 학과는 성인학습자 대상 정원내 전담학과로 설치되었음
2) 글로벌K-컬처대학에 속한 학과는 외국인유학생 대상 정원외 전담학과로 설치되었음
3) Bio-PRIDE 공유대학에 속한 학과는 자체 입학정원이 없으며 우리 대학교 재학생들이 부전공, 복수전공 형태로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음

단과대학	2025학년도 모집단위		단과대학	2026학년도 모집단위		입학정원		변경 내용	
	학부/학과			학부/학과		모집정원	모집유보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학부	종교문화재학과	사회문화교양대학	종교문화학부	종교문화유산학과	15		학과 명칭변경	
		한국어교육문화학과			한국어교육문화학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27			
	드론봇군사학과			드론봇군사학과		20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20			
교양대학	자율전공학부			자율전공학부		45		소속단과대학변경	
융합과학대학	운동레저학부	말산업학과	체육대학	운동레저학부	말산업학과	55		대학명칭변경	모집단위변경
		생활체육학과			생활체육학과				
		축구학과			축구학과				
		골프과학과		골프과학과		28			모집단위변경
	스포츠경영학부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30			모집단위변경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산업학과		20			모집단위변경
	사회문화대학	경호학과		스포츠과학과		24			소속대학 및 학과 명칭변경
	-			스포츠가라테학과		20		학과 신설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163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33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과		50			
	보건복지학과			보건복지학과		25			
	뷰티메디컬학과			뷰티메디컬학과		20			
융합과학대학	바이오산업학과	생명과학전공		바이오산업학과	생명과학전공	20	5	소속단과대학 변경	
		융합바이오전공			융합바이오전공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융합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20		대학명칭변경	
	항공서비스학과			글로벌항공서비스학과		30			학과 명칭변경
	무인항공기계학과			기계항공우주공학과		25			학과 명칭변경
	항공정비학과			항공정비학과		25			
융합과학대학	전기반도체컴퓨터공학과	컴퓨터전공		전기반도체컴퓨터공학과	컴퓨터전공	30	6		모집단위변경
		전기반도체전공			전기반도체전공				
	-			스마트농산림학과		20		학과 신설	
글로컬인재대학[1]	글로컬융합인재학과	지역환경산업전공	글로컬인재대학	글로컬융합인재학과	지역환경산업전공	36			
		글로컬융합사회전공			글로컬융합사회전공				
		창업경영전공			창업경영전공				

단과대학	2025학년도 모집단위		단과대학	2026학년도 모집단위		입학정원		변경 내용
	학부/학과			학부/학과		모집정원	모집유보	
글로벌K-컬처대학[2]	글로벌사회문화학과	한국어전공, 경영전공, 영화전공, 디자인전공, 체육전공, 항공서비스전공	글로벌K-컬처대학	글로벌사회문화학과	한국어전공, 경영전공	-		세부전공 축소
	-			글로벌융합학과	디자인전공, 골프전공, 항공서비스전공	-		학과 신설
	글로벌공학과	컴퓨터반도체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글로벌공학과	전기반도체컴퓨터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		세부전공 변경
	글로벌생명과학과	바이오융합전공, 뷰티메디컬전공, 간호학전공		글로벌생명과학과	바이오융합전공, 뷰티메디컬전공, 간호학전공, 임상병리학전공	-		세부전공 추가
Bio-PRIDE 공유대학[3]	제약바이오학과		충북PRIDE 공유대학	바이오융합학과		-		
	천연물소재학과							
	화장품산업학과							
	정밀의료·의료기기학과							
	시스템반도체학과			시스템반도체학과				
	배터리산업학과			배터리산업학과				
계	8개 단과대학, 4개 학부, 33개 학과		계	7개 단과대학, 3개 학부, 33개 학과		801	11	

1) 글로컬인재대학에 속한 학과는 성인학습자 대상 정원내 전담학과로 설치되었음
2) 글로벌K-컬처대학에 속한 학과는 외국인유학생 대상 정원외 전담학과로 설치되었음
3) Bio-PRIDE 공유대학에 속한 학과는 자체 입학정원이 없으며 우리 대학교 재학생들이 부전공, 복수전공 형태로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음

단과대학	2026학년도 모집단위		단과대학	2027학년도 모집단위		입학정원		계열	변경 내용	
	학부/학과			학부/학과		모집정원	모집유보			
사회문화교양대학	종교문화학부	종교문화유산학과	사회문화교양대학	종교문화학부	종교문화유산학과	15	-	인문사회	-	
		한국어교육문화학과			한국어교육문화학과			인문사회	-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27	-	인문사회	-	
				AI드라마제작학과		20	-	예체능	모집단위 신설	
	드론봇군사학과			-		-	-	-	항공대학 이동	
	만화애니메이션학과			AI융합디자인학부	만화애니메이션전공	25	-	예체능	모집단위명 변경 (학부제 개편)	
					AI미디어디자인전공					
	자율전공학부			자율전공학부		45	-	인문사회	-	
체육대학	운동레저학부	말산업학과	체육대학	스포츠산업학부	스포츠산업전공	75	-	예체능	모집단위명 변경 (학부제 개편)	
		생활체육학과			축구전공					
		축구학과			골프전공					
	골프과학과			스포츠과학부	스포츠지도전공	75	-	예체능	모집단위명 변경 (학부제 개편)	-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생활체육융합전공					말산업학과, 생활체육학과 통합
	스포츠과학과				스포츠과학전공					스포츠과학과, 스포츠가라테학과 통합
	스포츠가라테학과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163	-	자연과학	-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33	-	자연과학	-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과		50	-	자연과학	-	
	보건복지학과			보건복지학과		25	-	인문사회	-	
	뷰티메디컬학과			뷰티메디컬학과		20	-	자연과학	-	
	바이오산업학과	생명과학전공		-		-	-	-	AI융합대학 이동 및 모집단위명(바이오융합학과) 변경	
		융합바이오전공								
융합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20	-	공학	단과대학명 변경	-
	글로벌항공서비스학과			글로벌항공서비스학과		30	-	인문사회		-
	기계항공우주공학과			-		-	-	-	-	AI융합대학 이동 및 모집단위명 (기계공학과) 변경
	-			드론봇군사학과		20	-	인문사회	단과대학명 변경	단과대학 이동
	항공정비학과			항공정비학과		25	-	공학		-
	전기반도체컴퓨터공학과	컴퓨터전공		-		-	-	-	AI융합대학 이동	
		전기반도체전공								
	스마트농산림학과			-		-	-	-		

단과대학	2026학년도 모집단위		단과대학	2027학년도 모집단위	입학정원		계열	변경 내용	
	학부/학과			학부/학과	모집정원	모집유보			
-	-		AI융합대학	기계공학과	25	-	공학	단과대학 신설	단과대학명, 모집단위명 변경
				바이오융합학과	30	5	자연과학		단과대학명, 모집단위명 변경
				전기반도체컴퓨터공학과	30	6	공학		단과대학명 변경
				스마트농산림학과	20	-	자연과학		단과대학명 변경
글로컬인재대학	글로컬융합인재학과	지역환경산업전공	평생학습대학[1]	New-Start학과	36	-	자연과학	단과대학명, 모집단위명 변경	
		글로컬융합사회전공							
		창업경영전공							
글로벌K-컬처대학	글로벌사회문화학과	한국어전공, 경영전공	국제대학[2]	한국어학과	-	-	인문사회	단과대학명, 모집단위명 변경	
				경영학과	-	-	인문사회		
	글로벌융합학과	디자인전공, 골프전공, 항공서비스전공		항공서비스학과	-	-	인문사회		
				기계공학과	-	-	공학		
	글로벌공학과	전기반도체컴퓨터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전기전자공학과	-	-	공학		
				뷰티메디컬학과	-	-	자연과학		
	글로벌생명과학과	바이오융합전공, 뷰티메디컬전공, 간호학전공, 임상병리학전공		생명공학과	-	-	공학		
				교육학과	-	-	인문사회		
				스마트농산림학과	-	-	자연과학		
				보건복지학과	-	-	인문사회		
충북PRIDE공유대학[3]	바이오융합학과		충북PRIDE공유대학	바이오융합학과	-	-	자연과학	-	
	시스템반도체학과			시스템반도체학과	-	-	공학	-	
	배터리산업학과			배터리산업학과	-	-	공학	-	
계	7개 단과대학, 3개 학부, 33개 학과		계	8개 단과대학, 5개 학부, 31개 학과	809	11	-	-	

1) 평생학습대학(글로컬인재대학)에 속한 학과는 성인학습자 대상 정원내 전담학과로 설치되었음
2) 국제대학(글로벌K-컬처대학)에 속한 학과는 외국인유학생 대상 정원외 전담학과로 설치되었음
3) 충북 PRIDE 공유대학에 속한 학과는 자체 입학정원이 없으며 우리 대학교 재학생들이 부전공, 복수전공 형태로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음

<별표 2> 등록금반환기준 삭제 (2016.5.19.)

<별표 3> 학과별 수여학위명 <개정 2015.03.01., 2019.05.28., 2020.02.26., 2020.10.06., 2023.02.20., 2024.06.18., 2025.08.14., 2026.08.12.>

단과대학/학부	학과	수여학위명
인문사회과학대학	종교문화학과	문학사
	한국학과	문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사
	*영어학과	문학사
	*중국어학과	문학사
	*일본어학과	문학사
	법무법학과	법학사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아동보육상담학과	문학사
이공대학	의생명과학과	이학사
	의약바이오학과	이학사
	*의약화학과	이학사
	*생약자원개발학과	이학사
	식품공학과	이학사
	의료공학과	공학사
	컴퓨터시스템공학과	공학사
	메카트로닉스학과	공학사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공학사
	*신재생에너지학과	공학사
	*자원순환환경공학과	공학사
	*방재안전공학과	공학사
의료보건대학	보건행정학과	보건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작업치료학과	보건학사
	임상병리학과	이학사
	뷰티헬스학과	보건학사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이학사
	항공정비학과	공학사
	항공재료공학과	공학사
	항공서비스학과	관광학사
예술학부	연극영화학과	연극영화학사
	산업디자인학과	미술학사
체육학부	레저스포츠학과	체육학사
	*골프과학과	체육학사
	*태권도경호학과	체육학사
	*스포츠건강의학과	체육학사
	경호학과	경호학사

※ *학과는 2018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존치.

단과대학	2018학년도		
	학과		수여학위명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학과		문학사
	한국학과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아동보육상담학과		문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국제통상학과		무역학사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사
	법무법학과		법학사
	연극영화학과		연극영화학사
융합과학 기술대학	의생명과학과		이학사
	제약공학과		이학사
	식품공학과		이학사
	생체의공학과		공학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창의융합공학부	전기전자 공학전공	공학사
		소방방재 공학전공	공학사
	산업디자인학과		미술학사
	말산업융합학과		이학사
	체육 학부	스포츠 지도전공	체육학사
		스포츠 산업전공	체육학사
		경호학전공	경호학사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작업치료학과		보건학사
	임상병리학과		이학사
	보건행정학과		보건학사
	뷰티헬스학과		보건학사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이학사
	항공정비학과		공학사
	항공서비스학과		관광학사
	항공기계공학과		공학사
	항공재료공학과		공학사

단과대학	2019학년도		
	학과		수여학위명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학과		문학사
	한국어교육문화학과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사
	연극영화학과		연극영화학사
융합과학 기술대학	의생명과학과		이학사
	제약공학과		이학사
	식품공학과		이학사
	생체의공학과		공학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창의융합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공학사
		소방방재공학전공	공학사
	융합디자인학과		미술학사
	말산업융합학과		이학사
	체육 학부	스포츠지도전공	체육학사
		스포츠산업전공	체육학사
		무예경호전공	경호학사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작업치료학과		보건학사
	임상병리학과		이학사
	보건행정학과		보건학사
	의료뷰티케어학과		보건학사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이학사
	항공정비학과		공학사
	항공서비스학과		관광학사
	항공기계공학과		공학사
	항공재료공학과		공학사

단과대학	2020학년도		
	학과		수여학위명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학과		문학사
	한국어교육문화학과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사
	연극영화학과		연극영화학사
	체육학부	스포츠지도전공	체육학사
		스포츠산업전공	체육학사
		무예경호전공	경호학사
융합과학기술대학	의생명과학과		이학사
	제약공학과		이학사
	식품공학과		이학사
	생체의공학과		공학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창의융합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공학사
		소방방재공학전공	공학사
	융합디자인학과		미술학사
	말산업융합학과		이학사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작업치료학과		보건학사
	임상병리학과		이학사
	보건행정학과		보건학사
	의료뷰티케어학과		보건학사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이학사
	항공정비학과		공학사
	항공서비스학과		관광학사
	항공기계공학과		공학사
	항공재료공학과		공학사

단과대학	2021학년도	
	학과	수여학위명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학과	문학사
	한국어교육문화학과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사
	연극영화학과	연극영화학사
	스포츠지도학과	체육학사
	스포츠산업학과	체육학사
	무예경호학과	경호학사
융합과학 기술대학	의생명과학과	이학사
	의약바이오학과	이학사
	식품공학과	이학사
	의료공학과	공학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전기전자공학과	공학사
	소방방재학과	공학사
	융합디자인학과	미술학사
	말산업학과	이학사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작업치료학과	보건학사
	임상병리학과	이학사
	보건행정학과	보건학사
	의료뷰티케어학과	보건학사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이학사
	항공정비학과	공학사
	항공서비스학과	관광학사
	항공기계공학과	공학사
	신소재공학과	공학사

단과대학	2022학년도	
	학과	수여학위명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재학과	문학사
	한국어교육문화학과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사
	연극영화학과	연극영화학사
	스포츠지도학과	체육학사
	스포츠산업학과	체육학사
	무예경호학과	경호학사
	군사학과	군사학사
융합과학 기술대학	의생명과학과	이학사
	의약바이오학과	이학사
	식품산업학과	이학사
	의료공학과	공학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전기전자공학과	공학사
	소방방재학과	공학사
	융합디자인학과	미술학사
	말산업학과	이학사
	반도체공학과	공학사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작업치료학과	보건학사
	임상병리학과	이학사
	보건행정학과	보건학사
	의료뷰티케어학과	보건학사
	AI의료공학과	-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이학사
	항공정비학과	공학사
	항공서비스학과	관광학사
	항공기계공학과	공학사
	스마트운행체학과	-

단과대학	2023학년도	
	학과	수여학위명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재학과	문학사
	한국어교육문화학과	문학사
	연극영화학과	연극영화학사
	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사
	소방안전학과	공학사
	군사학과	군사학사
	경호학과	경호학사
융합과학대학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전기전자공학과	공학사
	반도체공학과	공학사
	의생명과학과	이학사
	식품제약학과	이학사
	뷰티케어학과	보건학사
	의료기기산업학과	공학사
	스포츠지도학과	체육학사
	스포츠산업학과	체육학사
	말산업학과	체육학사
	생활체육학과	체육학사
	축구학과	체육학사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작업치료학과	보건학사
	임상병리학과	이학사
	보건행정학과	보건학사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이학사
	항공서비스학과	관광학사
	무인항공기계학과	공학사
	항공정비학과	공학사
Bio-PRIDE 공유대학	제약바이오학과	이학사
	천연물소재학과	이학사
	화장품산업학과	이학사
	정밀의료·의료기기학과	이학사
-	융합기계·전기전자 부품공학과	공학사

대학명	2024학년도	
	학과	수여 학위명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재학과	문학사
	한국어교육문화학과	문학사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사
	소방안전학과	공학사
	국가안보학과	군사학사
	경호학과	경호학사
융합과학대학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전기반도체공학과	공학사
	생명과학과	이학사
	융합바이오학과	이학사
	스포츠지도학과	체육학사
	스포츠산업학과	체육학사
	말산업학과	체육학사
	생활체육학과	체육학사
	축구학과	체육학사
	골프과학과	체육학사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작업치료학과	보건학사
	임상병리학과	이학사
	보건행정학과	보건학사
	뷰티메디컬학과	보건학사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이학사
	항공서비스학과	관광학사
	무인항공기계학과	공학사
	항공정비학과	공학사
글로컬인재대학	지역환경산업학과	공학사
	글로컬융합사회학과	문학사
Bio-PRIDE 공유대학	제약바이오학과	이학사
	천연물소재학과	이학사
	화장품산업학과	이학사
	정밀의료·의료기기학과	이학사
	시스템반도체학과	공학사
	배터리산업학과	공학사
-	융합기계·전기전자 부품공학과	공학사
	반도체융합학과	이학사

대학명	2025학년도		
	학과		수여 학위명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재학과		문학사
	한국어교육문화학과		문학사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사
	드론봇군사학과		군사학사
	경호학과		경호학사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디자인학사
융합과학대학	전기반도체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전공	공학사
		전기반도체전공	공학사
	바이오산업학과	생명과학전공	이학사
		융합바이오전공	이학사
	스포츠지도학과		체육학사
	스포츠산업학과		체육학사
	말산업학과		체육학사
	생활체육학과		체육학사
	축구학과		체육학사
	골프과학과		체육학사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작업치료학과		보건학사
	임상병리학과		이학사
	보건복지학과		보건학사
	뷰티메디컬학과		보건학사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이학사
	항공서비스학과		관광학사
	무인항공기계학과		공학사
	항공정비학과		공학사
글로컬 인재대학	글로컬 융합인재학과	지역환경산업전공	공학사
		글로컬융합사회전공	문학사
		창업경영전공	경영학사
글로벌 K-컬처대학	글로벌 사회문화학과	한국어전공	문학사
		경영전공	경영학사
		영화전공	예술학사
		디자인전공	디자인학사
		체육전공	체육학사
		항공서비스전공	관광학사
	글로벌공학과	컴퓨터반도체공학전공	글로벌공학사
		기계공학전공	글로벌공학사
	글로벌 생명과학과	바이오융합전공	글로벌이학사
		뷰티메디컬전공	글로벌보건학사
		간호학전공	글로벌간호학사
Bio-PRIDE 공유대학	제약바이오학과		이학사
	천연물소재학과		이학사
	화장품산업학과		이학사
	정밀의료·의료기기학과		이학사
	시스템반도체학과		공학사
	배터리산업학과		공학사
-	융합기계·전기전자 부품공학과		공학사
	반도체융합학과		이학사

대학명	2026학년도		
	학과		수여 학위명
사회문화교양대학	종교문화유산학과		문학사
	한국어교육문화학과		문학사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사
	드론봇군사학과		군사학사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디자인학사
체육대학	말산업학과		체육학사
	생활체육학과		체육학사
	축구학과		체육학사
	골프과학과		체육학사
	스포츠지도학과		체육학사
	스포츠산업학과		체육학사
	스포츠과학과		체육학사
	스포츠가라테학과		체육학사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작업치료학과		보건학사
	임상병리학과		이학사
	보건복지학과		보건학사
	뷰티메디컬학과		보건학사
	바이오산업학과	생명과학전공	이학사
		융합바이오전공	이학사
융합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이학사
	글로벌항공서비스학과		관광학사
	기계항공우주공학과		공학사
	항공정비학과		공학사
	전기반도체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전공	공학사
		전기반도체전공	공학사
	스마트농산림학과		이학사
글로컬 인재대학	글로컬 융합인재학과	지역환경산업전공	공학사
		글로컬융합사회전공	문학사
		창업경영전공	경영학사
글로벌 K-컬처대학	글로벌 사회문화학과	한국어전공	문학사
		경영전공	경영학사
	글로벌융합학과	디자인전공	디자인학사
		골프전공	체육학사
		항공서비스전공	관광학사
	글로벌공학과	전기반도체컴퓨터공학전공	공학사
		기계공학전공	공학사
	글로벌 생명과학과	바이오융합전공	글로벌이학사
		뷰티메디컬전공	글로벌보건학사
		간호학전공	글로벌간호학사
		임상병리학전공	글로벌이학사
충북 PRIDE 공유대학	바이오융합학과		이학사
	시스템반도체학과		공학사
	배터리산업학과		공학사
-	융합기계·전기전자 부품공학과		공학사
	반도체융합학과		이학사

<별표 4>계약학과 입학정원 <신설 2017.02.02.><개정 2023.08.23., 2024.06.18.>

구분	학과	입학 정원	비고
중소기업 계약학과	융합기계·전기전자 부품공학과	20	
	반도체융합학과	20	
계	2개 학과	40	

* 반도체융합학과 입학정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변경에 따라 2024학년도 한시적으로 입학정원을 20명에서 14명으로 변경

<별지서식 제1호> <개정 2020.10.06., 2021.06.25., 2024.06.18.>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다음의 학위를 수여함.

전 공: ○○학사 (○○○○학과)
복 수 전 공: ○○학사 (○○○○학과)
연 계 전 공: ○○학사 (○○○○전공)
융 합 전 공: ○○학사 (○○○○전공)
학생설계전공: ○○학사 (○○○○전공)
부 전 공: ○○학과
소 단 위 전 공 : ○○과정

20 년 월 일

중원대학교 총장 (학위) ○ ○ ○ 인

학위번호: 중원대-2000-학-0000

* 학과별 인증 이수자는 소단위전공 아래에 인증 관련 표기
*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과정 이수자는 소단위전공 아래에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과정 이수' 표기

<별지서식 제2호> <개정 2020.10.06.>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소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 공 : ○○학사 (○○○○학과)

20 년 월 일

중원대학교 총장 (학위) ○ ○ ○ 인

수료증서번호: 중원대-2000-학-0000

<별지서식 제3호> <개정 2020.10.06.>

명학 제 호

명 예 학 사 학 위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_____
_____등 우리 대학(국가/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명예를 드높인 점을 인정하여 명예 학사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중원대학교 총장 (학위) 인

학위번호: 중원대학교-2000-명학-0000